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한마음재가센터

제1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1. 이용 정원:
 - a. 한마음재가센터-주간보호의 이용정원은 38명+인지등급3명으로 총 41명으로 정한다.
 - b. 한마음재가센터-방문요양의 이용정원은 정함이 없다.
2. 이용 모집방법
 - a. 이용모집방법으로는 크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구분하며, 전단지 제작 및 배포, 홍보물 배치, 지역게시판 등을 통한 한마음재가센터-주간보호 사업을 소개하도록 한다.
 - b. 오프라인 모집/홍보 방법
 - i. 전단지/간판/현수막/차량 랩핑 등을 통한 홍보
 - ii. 관할 지자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모집
 - iii. 이용어르신, 보호자, 직원 봉사자 등 인적자원을 활용한 모집
 - c. 온라인 모집/홍보 방법
 - i. 블로그/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대상
 - a.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재가 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2. 이용구비서류
 - a.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b. 건강진단서 1통 (현재질환 및 감염성 질환 검사 포함)
 - c.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관련서류(가족관계증명서)
 - d. 관할 행정관청 이용의뢰서(필요 시)
 - e. 이용 어르신 및 보호자 신분증 - 확인용
 - f. 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해당자)
3. 계약기간
 - a.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이용시작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만료기간으로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 b.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도록 한다.
 - c.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 계약 목적
 - a. 시설과 수급자와 보호자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 계약당사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 목적이 있다.
 - b.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a. 월이용료
 - i.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 b.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i.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c. 월 이용료의 납부일은 보호자나 수급자와 상의 후 정하도록 한다.
6.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 a. 신원인수인의 권리
 - i.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ii.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 iii.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iv. 이용자가 안전한 생활여건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 v.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계획서에 따른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 1. 장기요양기록지를 매월 발송한다.
 - 2. 발송방식은 전자프로그램(케어포 등), 팩스, 우편물, 문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vi. 계약자(보호자)가 시설에서 실시하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서비스 질을 평가 할 수 있는 권리
- vii.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노인 학대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지 확인 할 수 있는 권리
- viii. 이용자 및 계약자(보호자)가 시설의 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이용자를 위한 개선사항 및 고충을 논의 할 수 있는 권리
- b.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i.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ii.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
 - iii.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iv.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v. 이용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7. 계약의 해제

- a. 수급자, 대리인 또는 보호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 a. 수급자나 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유선 등을 통해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 b. 급여계약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 c. 수급자가 퇴소를 희망할 경우 수급자가 이용 시 반입한 물품(보관물품 포함)을 수급자나 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d. 퇴소의 사유가 전원의 사유일 경우 퇴소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제공 한다.
 - e. 수급자의 퇴소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수급자나 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 2. 시설에 의한 계약의 해제
 - a.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 b.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c.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d.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은 수급자나 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수급자나 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 e.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 f.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g.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